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년월일 : 2001.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개정사유

- 평창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행정규제에 대한 법령정비 및 후속조치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편의제공

□ 주요내용

-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수수료등의 납부방법 개선(선납⇒선납,분납)을 통한 편의제공(안 제6조제2항·3항, 안 제11조제1항·2항·3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35조)
- 연계 조항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 (안 제40조제2항)
- 준공검사후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전 개선요령, 급수장치관리방법 주지 등 신설 (안 제7조2제3항)

□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선납하며”를 “선납 또는 분납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 하되 분납의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선납된”을 “납부된”으로 한다.

제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준공검사를 필한 뒤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선납”을 “납부”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선납된”을 “납부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일까지 급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1조의 공사비 납부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수도법

第2條(任務)

④ 水道事業者는 水道를 計劃的으로 整備하고 水道事業을 合理的으로 經營하여야 하며 水道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供給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3條(供給規程)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道물의 料金, 給水 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水道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水道물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의 條例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 계산수수료 등)를 <u>선납</u>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p> <p>③제2항에 따라서 <u>선납</u>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u><신설></u></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 <u>선납</u>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u>납부</u>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p> <p>②----- ----- ----- <u>선납 또는 분납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되 분납의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u> ----- -----</p> <p>③----- <u>납부된</u> ----- -----</p> <p>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준공검사를 필한 뒤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 <u>납부</u> ----- ----- -----</p> <p>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 <u>납부</u>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일까지 급수사</p>

현행	개정안
<p>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p> <p>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 부 또는 추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④(생략)</p> <p>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p> <p>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13.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납부된 ----- ----- ----- ----- -----</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 ----- ----- ----- ----- 제11조의 공사비 납부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④(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40조(정수처분) ①----- ----- -----</p> <p>1.~13. (현행과 같음)</p> <p><삭제></p>